

경조비지급 규정

□ 제정 : 1998.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조금 지급 구분) 경조금 지급은 경하 및 기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하 : 본인의 결혼, 본인의 회갑, 자녀의 결혼, 부모의 회갑, 배우자 부모의 회갑
2. 기복 : 본인의 사망, 부모의 사망, 자녀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 부모의 사망

제3조(지급액) ①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경조금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교 교직원 중 1인 이상(친족일 경우)이 전조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4조(경조금 지급절차) 제2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직원 본인 또는 소속부서 교직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총무처에 경조금을 신청한다.

제5조(경조금 지급) 총무처는 관련서류를 접수한 즉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